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5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5월13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제안사유

- 21세기 문화도시 창출을 위한 부천시영상문화단지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차종에 따른 1회주차요금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6조 제1항)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을 현재 노외주차장 2급지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가?</p> <p>○ 개정 조례안의 요금결정은 무슨 근서에 의해 정하였는가?</p> <p>○ 야인셀트장 관람시간이 약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2시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p> <p>○ 현재는 야인셀트장만 관람하므로 2,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p> <p>○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업체에 위탁을 하였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바람.</p>	<p>○ 예</p> <p>○ 약 2시간 정도 관람시 노외주차장 2급지요금을 기준했을 때 2,400원 정도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p> <p>○ 앞으로 미니건축물 전시장의 개장과 동춘서커스장등 관람시간이 2시간 정도는 소요 될것으로 예상했음.</p> <p>○ 영상문화단지내에 각종 시설물이 2시간이상 관람시간이 소요됨.</p> <p>○ 변경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수정안 요지
 - 별 첨

- 7. 소수의견요지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제132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안년월일 : 2003년 5월 14일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의 요금산정을 각종 시설물의 관람 소요시간을 2시간 정도 노외주차장 2급지틀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야인시대 촬영세트장 시설만 관람으로 약 1시간이면 충분함에도 2시간 관람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다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요금을 인하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을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3,000원을 2,000원으로,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000원을 3,000원으로,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0원을 5,000원으로 수정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별표 4중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요금 "3,000원"을 "2,000원"으로,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요금 "4,000원"을 "3,000원"으로,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요금 "6,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표 4]

신·구조문대비표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제6조 관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구분	차종	요금	구분	차종	요금
	제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3,000원	제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2,000원
		15인승이상 25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000원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000원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0원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5,000원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1과 같이 한다”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4]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차 종	요 금
1회요금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2 8,000원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3 4,000원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5 8,000원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 1과 같이 한다.</u></p> <p>② 및 ③ (생략)</p>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 ----- -----<u>별표 1과 같이 하고</u> <u>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u> <u>별표 4와 같이 한다.</u></p> <p>② 및 ③ (현행과 같음)</p>